공 개

의안번호	제 44 호
보 고 연 월 일	2023. 10. 23. (제 18 차)

보고사항

대표계좌의 실제투자자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 보고

증권선물위원회회의 안건

제 출 자	위원장 김 소 영
제출 연월일	2023. 10. 23.

1. 보고주문

□ 대표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를 거래소 시장감시에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음과 같이 보고한다.

2. 보고이유

□ CFD계좌, 외국인투자자대표계좌 등 대표계좌에 대해서는 “시장감시”가 “이상거래 심리”에 포함되어 거래소가 시장감시 시 실제 투자자의 거래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지에 대한 유권해석을 보고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문언해석 및 금융실명법, 자본시장법 입법취지 등을 고려할 때 대표계좌에 대한 시장감시는 이상거래 심리에 포함되어 거래소는 대표계좌의 실제 투자자의 거래정보 요청이 가능

○ 대표계좌의 특성상 거래소가 실제 투자자의 거래정보를 시장감시에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이상거래 심리 대상을 특정하지 못해 이상거래 심리 업무에 장애가 발생

- 따라서 대표계좌의 경우 실제 투자자의 거래정보에 대한 요청은 심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

○ CFD계좌 등 대표계좌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발생시 실제 투자자에 대한 거래정보가 없는 경우, 동일 시세조종 세력 여부에 대한 확인 등이 어려워 불공정거래 적발에 한계

- 금융실명법상 비밀보장의 예외를 인정한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표계좌의 실제 투자자 정보를 활용할 필요

□ 다만, 금융실명법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금융정보를 활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거래소는 실제 투자자의 성명·주민등록번호 단위가 아닌 계좌번호 단위의 거래정보를 요청할 필요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붙임)

(붙임)

관계 법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금융거래의 비밀보장) ①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신탁의 경우에는 위탁자 또는 수익자를 말한다)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구든지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에게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용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거래정보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래소허가를 받은 거래소(이하 "거래소"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경우에 필요로 하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가 보유한 거래정보등의 제공

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異常去來)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를 수행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77조(업무) ① 거래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다만,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는 제37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청산기관 또는 결제기관으로 지정된 거래소로 한정한다.

8.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이 비정상적으로 변동하는 거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이하 "이상거래"라 한다)의 심리 및 회원의 감리에 관한 업무

제402조(시장감시위원회) ① 거래소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감시위원회를 둔다.

1. 시장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및 회원에 대한 감리(지정거래소가 제78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행하는 감시,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거래참가자에 대한 감리를 포함한다)

제404조(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회원의 감리)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투자업자(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을 대상으로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에 한한다)에게 그 사유를 밝힌 서면으로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회원에 대하여 그와 관련된 업무·재산상황·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감리할 수 있다.

1. 거래소시장에서 이상거래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해당 증권의 종목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 품목의 거래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경우
2. 회원이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을 준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3. 회원이 제178조의2를 위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경우

② 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심리 또는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회원에 대하여 이상거래 또는 업무관련규정 위반혐의와 관련된 보고, 자료의 제출 또는 관계자의 출석·진술을 요청할 수 있고, 지정거래소는 다른 거래소 또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 대하여 이상거래의 심리 및 감리와 관련한 정보의 제공 또는 교환을 요구할 수 있다.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제176조·제178조·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제172조·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1.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2.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 매매품목의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공시·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3. 그 밖에 증권시장 또는 파생상품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는 경우

□ **「시장감시규정(거래소 규정)」**

제11조(시장감시) ① 위원회는 심리의 수행을 위하여 이상거래혐의종목을 선정하고,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거래소의 업무관련규정 또는 법 제178조의2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거래를 선정하며, 불공정거래의 예방 등을 위하여 이상거래의 염려가 있는 경우 공시, 풍문, 보도 등을 고려하여 집중적인 감시가 필요한 종목(이하 "이상급등종목"이라 한다)을 선정하는 등 시장감시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상거래혐의종목은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종목의 거래양태, 가격변동, 거래량규모, 시세·거래관여도 및 풍문등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선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소관부서	공정시장과
연 락 처	02-2100-2682